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運送書類의 審査原則

高 旻 杓*

目	次
第1章 序 論	第3章 信用狀去來와 運送書類의 審査原則
第2章 信用狀去來와 運送書類	第4章 結 論
第1節 貿易去來와 信用狀	
第2節 信用狀去來와 運送書類	

第1章 序 論

신용장의 주요 목적은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에게 대금결제를 보장해 주고, 매수인에게는 계약상 품인도를 서류상 보장함으로써 무역업자간의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는 데 있다. 특히 무역거래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바 이러한 자금의 조달과 금융수혜에 있어서 신용장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신용장은 무역거래업자간에 은행의 신용을 개입시켜 무역업자의 신용력을 보강함으로써 무역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상당하게 제거시켜 무역거래를 촉진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유효하게 활용되는 신용장의 의의는 국제상업회의소의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本 論文에서는 '信用狀統一規則'으로 略稱함)에 규정하고 있다" 즉 본 규칙에 있어서, 화환신용장 또는 보증신용장(이하 신용장이라고 칭함)이란 표현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고객(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르거나 또는 은행 스스로를 위하여 행동하는 은행(발행은행)이 신용장의 제조건을 충족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이행하겠다는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 a. 제3자(수익자)에게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을 행하거나,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하거나, 또는
- b. 타은행에게 그러한 지급을 행하도록 또는 그러한 환어음을 인수하여 지급하도록 수권 하거

* 濟州大學校 經商大學 貿易學科 教授, 經濟學博士

1) UCP 500, 1993, 제2조

나, 또는

c. 타은행에게 매입하도록 수권 한다.”

따라서 신용장이란 무역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발행하는 대금결제수단인 바, 이는 매도인에게는 물품대금의 결제를 은행이 확약해주고 매수인에게는 약정물품의 인도를 서류에 의해 보장함으로써 국제매매거래를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실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전세계의 무역액이 급격히 증대됨과 동시에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 방식이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이는 신용장이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 중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장거래는 최근에 있어서도 활발히 이루어져 세계의 무역액중 상당부분이 신용장에 의해 대금결제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총수출액중 약 70%가 신용장에 의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신용장거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WTO체제의 출범 등으로 인하여 국제무역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지구촌시대의 도래로 국제무역거래지역의 확대와 거래형태의 다변화 및 무역대금결제수단의 다양화로 인하여 신용장거래의 역동성을 증대시키고 국제무역관행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역거래에 있어서 EDI체제의 도입으로 신용장제도와 컴퓨터를 접속시킨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국제은행간 통신망)가 국제외국환은행간에 등장함으로써 무역관련서류 특히 운송서류에 대한 적격요건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신용장거래의 대상은 신용장통일규칙에 명시한 바와 같이 오직 서류이며²⁾ 서류의 적격요건은 신용장거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류의 적격요건의 판별은 서류의 심사원칙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신용장조건에서 통상 요구되는 서류 가운데 핵심적 서류는 운송서류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운송서류는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중추적 서류이며 운송서류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원칙의 중요성은 신용장거래의 핵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신용장 통일규칙 제5차 개정에서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³⁾, 전자문서교환)가 전세계적으로 점차 보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류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신용장관계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류에 관한 점검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운송서류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면서 국제표준은행업무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을 통일된 무역관행으로 정착시키고 있다.⁴⁾

오늘날 EDI체제에 의한 전자서류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때로는 위조된 운송서류를 이용한 대금결제나 화물수령이 빈발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운송서류의 적격성

2) UCP 500, 1993, 제4조

3) 김은상, 전략경영과 EDI, 매일경제신문사, 1994, pp.55-56

4) ICC, Document No. 470-37/4, June 10, 1991, p.36

에 대한 판단 결과는 신용장 당사자에게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운송서류상 하자 발견시 은행은 서류의 매입을 중단하고, 대부분 당해서류의 발행인에게 확인하거나, 추심 의뢰 또는 하자부 매입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 거절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업자로서는 신용장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하거나 사전에 신용장조건변경을 실행하여, 매입시의 불이익을 예방하여야 한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핵심은 신용장조건 이행이며 신용장조건 이행은 제시된 서류에서 구현되고 서류의 적격요건의 판별은 은행의 서류심사원칙의 적용에서 실현된다는 견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운송서류의 심사원칙을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원적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운송서류의 심사원칙에 관한 국제적 관행을 국제상무원적 측면에 분석 고찰할 것이며, 운송서류의 적격성에 관한 합리적 판별기준을 고찰하여 신용장 분쟁의 예방을 위한 지식을 제고시킴으로서 종국적으로 국제무역업의 국제경쟁력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第 2 章 信用狀去來와 運送書類

第 1 節 貿易去來와 信用狀

1. 무역거래와 신용장

무역거래는 언어와 문자, 법률, 관습, 통화, 정책 등을 달리하는 격지자간의 상거래이기 때문에 통상 장시간의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수송 등으로 인한 위험과 상거래상의 가격변동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즉 국제무역거래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와는 달리 상품의 인도와 대금의 결제에 있어 매우 복잡하면서도 많은 위험이 수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이한 관습, 상이한 언어, 상이한 법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원격지에 있으며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도 서로 달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수출업자는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을 염려하여 상품을 인도기 전에 그 대금을 미리 받고자 하며 수입업자를 이와 반대로 상품입수불능위험을 염려하여 계약상품을 인도 받고 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 국제 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의 결제는 특수한 경우의 선지급(payment in advance) 또는 반대로 후지급(sales on credit)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화환어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⁵⁾. 즉 수출업자는 수입업자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여기에 담보물로서 화물을 서류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서 어음의 할인의 형식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매수인은 그 화환어음에 대한 지급을

5) 金容福, 信用狀論, 博英社, 1988, pp.8-9

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화환제도는 주로 상품의 인수, 인도와 대금수수와의 시간적 차이에서 생기는 매매당사자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한 것이지만, 계약상품의 인도와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화환제도에 의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반드시 보장된 것은 아니다.

국내외거래를 막론하고 상거래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상품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인도된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지급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다주게 된다. 물론 거래처의 선정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충분히 조사하여 선정한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국제무역환경의 변동 내지는 수입국의 여건변동 등에 의하여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에 있어서 대금결제조건은 무역거래의 핵심적 조건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무역계약의 대금지급조항은 당해계약의 원초적 요소이기 때문이다⁶⁾. 특히 수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정된 기일에 확실하게 지급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한층 중요하게 된다.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의 재정상태나 신용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도덕성내지 신뢰성에 대한 정도를 잘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국내의 수출업자의 자산상태는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어음지급인인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는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수출에 따른 금융의 안전성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무역거래에 있어서 환어음 거래가 어려워져 무역거래자체가 곤란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수출환어음은 국내에 있어서의 환어음과 달리 은행이 매입할 경우, 아직 지급인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음이고, 대부분 그 지급인은 외국의 수입업자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 그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은행측로서는 당해 어음의 매입에 난색을 표하게 된다. 설사 D/P, D/A처럼 환어음에 상품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불충분할 수도 있으며 담보물 처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수출업자가 당해 환어음에 대한 할인을 요청하여도 추심 어음으로 취급되어 수출업자로서는 자금상의 압박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수출거래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와 같이 무역거래상의 대금회수불능위험을 감소시키고 어음결제의 불편이나 불안을 제거하여 국제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이 높은 은행이 대금지급을 약속하거나 수출업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을 보증해 준다면 수출업자로서는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로서도 상품의 소유권을 표시하고 있는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은행에서 대금을 결제하게 한다면 역시 친척적으로 수입거래를 수행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자 모두 거래은행으로부터 무역거래상의 금융혜택을 제공받을 수가 있어서 무역거래가 급격히 증대되고 기업의 이익기회를 증대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신용장거래가 하나의 상관습으로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생성되어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⁷⁾. 신용장거래는 수출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며 또한 수출화환은 신용장의 이용으로 화물대표증권을 담보로 무역금융을 사용할

6) H. 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 Europe Publications Limited, London, 1984, p. 54

7) 飯田勝人, "信用狀의 基本的 原理", *金融法務事情* No. 1097, 1985, p. 41

수 있고 수출회환에 대한 결제의 확실성이 보장되어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원활유적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며 대금결제방식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결제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2. 信用狀의 特性

상업신용장의 주요목적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대금결제수단을 마련하여, 매도인에게 계약물품의 대금결제를 보장해주고, 매수인에게는 계약물품의 인도를 보장해 줌으로서 상이한 국가에서 거래활동을 하는 상인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⁸⁾. 따라서 신용장은 이러한 신용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거래제도를 확립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국제상업회의소에서는 신용장통일규칙을 제정하고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5차에 걸쳐 개정하여 신용장거래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신용장통일규칙이 국제적통일규약으로 정착된 바, 신용장통일규칙을 중심으로 신용장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용장이란 그 명칭이나 표기에 관계없이 고객(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르거나 또는 은행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한 은행(신용장발행은행)이 신용장의 제 조건을 충족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제3자(신용장의 수익자, 또는 그의 지시인)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및 지급하거나, 그러한 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수권 하겠다고 하는 모든 약정서를 의미" 하는 바, 신용장은 신용장대금의 지급에 관한 발행은행의 확약이기 때문에 신용장은 신용장을 발행하고 통지하고 거래하는데 있어서 다른 약정과는 달리 특수한 성질이 있는데 이것이 신용장거래의 독립, 추상성이다.

1) 信用狀의 獨立性

신용장거래의 독립성이란 신용장은 본질상 비록 매매계약이나 기타 다른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그런 계약과는 독립되어 있고 또한 당해 계약에 구속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는 데 이를 신용장거래의 독립성 원칙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미국의 통일상법전에서도 명확히 규정¹⁰⁾ 하고 있는바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Credits, by their nature, are separate transactions from the sales or other contract(s) on which they may be based and banks are in no way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s),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such contract(s) is included in the Credit. Consequently, the undertaking of a bank to pay, accept and pay Draft(s) or negotiate and/or to fulfil any other obligation under the Credit, is not subject to claims or defences by the Applicant resulting from his relationships with the Issuing Bank or the Beneficiary.

8) H.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op.cit., p.1

9) UCP 500, 1993, Art. 2

10) 美國統一商法典(Uniform Commercial Code : UCC) 第5-114條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기초를 두고 있을 수 있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따라서 은행은 그러한 계약에 대한 여하한 참조사항이 신용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결코 무관하고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결국 은행이 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 또는 매입한다거나 및/또는 신용장에 따른 기타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는 확약은 발행행의뢰인이 발행은행 또는 수익자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주장하는 청구권 또는 항변에 지배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신용장거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장 거래의 독립성은 신용장거래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은행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에 관해서는 제3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특히 신용장발행은행은 신용장발행행의뢰인과 체결하는 신용장발행약정에 따라 그 약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신용장거래의 독립성은 영국과 미국의 여러 판례에 의해서 확립되어진 원칙이다¹¹⁾. 물론 신용장이 발행되기까지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신용장을 대금결제수단으로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일 뿐 신용장거래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신용장거래의 기초가 되었을 지라도 신용장거래에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 되는 것이다. 만일 신용장거래에서 그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은행이 매매당사자가 되어 무역거래가 마치 3자간의 매매계약이 되어 무역거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가 없고, 신용장이 오늘날과 같이 널리 이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격히 증가된 국제교역에 신용장이 기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의 독립성은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의 무역관행에 필수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2) 信用狀의 抽象性

무역거래는 격지자간의 상거래이기 때문에 물품이나 용역을 추상화시킨 서류에 의해서 거래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물품을 대표하고 증권화시킨 선하증권은 오래 전부터 무역거래의 담보서류로서 사용, 인정되어 왔으며 서류자체의 신뢰도는 무역거래의 성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용장거래는 신용장의 독립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신용장거래의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에 의해서 거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거래관행은 영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여러 판례에 의하여 기본적 법원리로 정착¹²⁾ 되었으며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다음과 같이 “신용장거래의 추상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In Credit operations all parties concerned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and/or other performances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¹³⁾.” 와같이 명시하여 신용장거래가 서류의 거래임을 국제무역거래에서 관행화되고 승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거래는 실제 거래되고 있는 물품이나 용역에 중점을 두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에 의해서 “요구되고

11) UCP 500, 1993, Art. 3

12) H. 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op. cit. pp. 71-75

13) Henry Harfield, Bank Credits and Acceptance, 5th ed.,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74, pp. 71-72

14) UCP 500, 1993, Art. 4

제시된 서류"에 기초를 두고 신용장에 의한 의무이행 여부 및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류에 의한 거래는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특징적인 거래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신용장거래의 추상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는 매매당사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물품이 실제로 어떠한 상태이든 신용장거래와는 별개의 사항이며 신용장거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이 신용장거래 약정의 이행 여부의 결정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물품이 목적지에 서류보다 먼저 도착되었을 때 매수인이 물품상태를 확인한 후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조건상의 적정한 서류의 인수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비록 도착된 물품이 계약물품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제시된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 관계당사자는 신용장상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결국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을 충실히 충족시켰느냐 하는 점인데 만일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을 성실하게 충족시켰다면 물품의 도착여부 및 물품의 상태에 관계없이 신용장대금을 결제해야하며,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상이하다면 신용장 발행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¹⁵⁾. 그러므로 신용장거래에서는 물품을 인수하고 점점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으며 제시된 서류가 외관상 신용장조건에 부합되는 한 대금지급의 의무를 회피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신용장거래는 물품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과의 약정이고 거래이기 때문에 오직 서류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용장거래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신용장의 추상성을 거부한다면 신용장의 존재의의가 상실되고 신용장거래가 오늘날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은 신용장의 존재가치를 받쳐주는 양대 지주이며 신용장의 핵심적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

第 2 節 信用狀去來와 運送書類

1. 信用狀去來와 運送書類¹⁶⁾

1) 운송서류의 의의

일반적으로 상품의 매매에서는 매매되는 물품의 인도, 인수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의 현실적 인도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이 그 계약에 명시 또는 묵시되어 있는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이 현물의 인도를 완료했을 때에 그 물품의 위험과 소유권도 이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리고 이 경우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 교환적으로 이행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매수인에 대하여 특별한 결제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 매도인의 현물인도의 완료여부는 매수인의 지급의무의 발생과 상관관계에 있다. 원격지간의 거래가 행하여지는 국제무역거래에서는 물품이 선적되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일반적으로 시일이 소요하게 된다. 무역매매에

15) Finkelstein Herman M., Legal Aspect of Commercial Letter of Credit,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0.

16) 金容福, 貿易實務, 博英社, 1994, pp. 301-306.

이와 같은 현물의 인도, 인수에 의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거래상 불편과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물품을 유가증권화하여 이 증권의 배서양도를 통해 물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무역업계에서 일반화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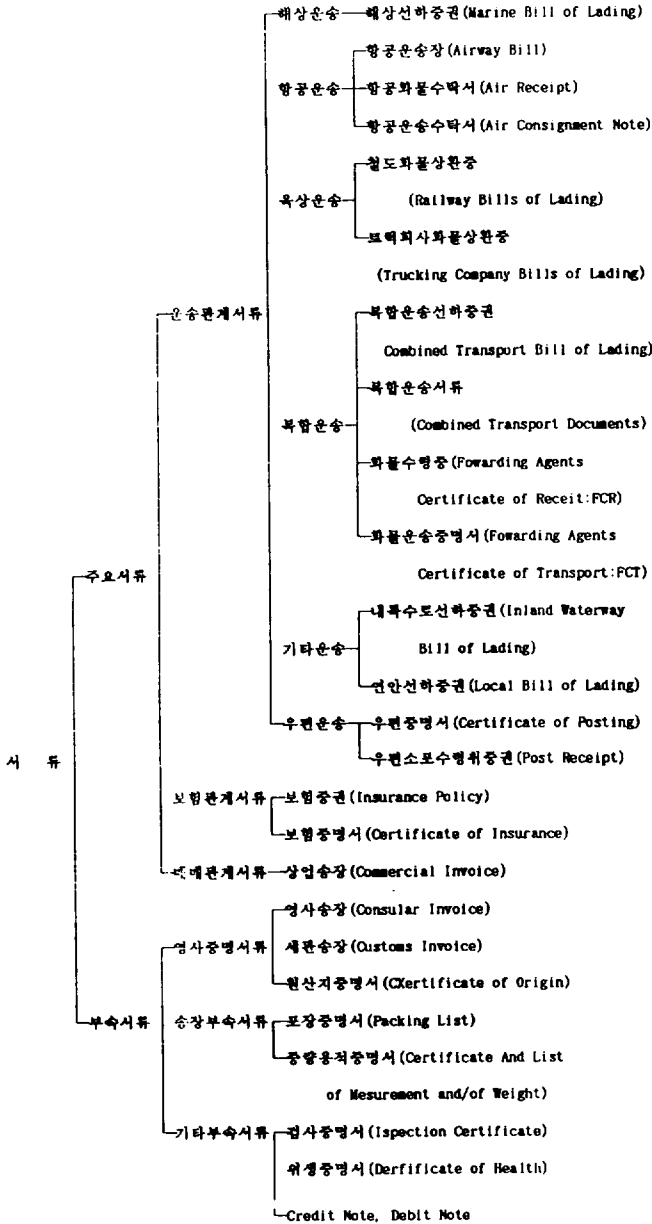
그리하여 매매물품의 운송 책임이 있는 운송회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관계에 개입하게 된다. 운송회사는 당해 물품을 증권화한 운송서류를 매도인에게 교부하여 물품 자체인 것처럼 거래하는 방법이 무역업계에서 널리 인정되어 매매계약의 이행을 서류라는 수단으로 행하게 하는 특수한 상관행이 실현되었다. 이와 같은 상관행을 정형화한 무역거래조건이 CIF Terms매매거래인 것이다.

따라서 CIF매매에서는 매도인은 계약에 정해진 상품을 양륙항으로 향하는 선박에 특정 기한내에 선적한 후 지체없이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하며, 매수인은 당해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상품을 현실적으로 제공했을 경우에도 서류의 제공이 없는 한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반대로 매수인은 상품의 도착 전이라도 서류가 제공되었을 때에는 지급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CIF매매는 물품의 매매라기보다는 서류의 매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로 되어 있으며, 매도인이 대금지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FOB조건에 있어서는 매도인은 매매상품의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수단에 물품을 선적하여 매수인측 - 매수인의 수탁자로서의 운송인 - 에 인도하면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운송회사로부터 지시식 선하증권 등이 발행, 교부되어 적법하게 매수인에게 양도되지 아니되었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이 아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종래 유럽이나 남미제국의 관습에서는 선하증권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증권을 구비할 것을 FOB조건에 매도인의 의무로 부과하였지만, 이는 FOB조건에 본질은 아니며 대부분 대금지급에 있어서의 서류를 이용하는 화환결제상의 필요성, 즉 결제상의 편의성 때문에 파생된 거래관습인 것이다. 따라서 FOB관행에서는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서류의 구비를 요구할 경우에 매도인은 당해 특약에 구속되어 요구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제공함으로써 당해 물품의 소유권이 본선상에서 인도된 시점에서 소급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 계약의 본질상 매수인은 선적항으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자이며, 적하의 화주이기 때문에 선하증권 또는 유사한 권리증권은 매수인 앞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매수인도 본선상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약정품의 인도를 받아 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운송서류는 무역관습상 계약상품의 인도입증 증거가 되며, 무역거래에 있어 환어음에 첨부되는 운송서류(Documents)는 당해 환어음의 담보가 된다. 수출업자는 약정물품이 선적되면 조속히 물품대금결제를 서두르게 되는 바, 무역거래에서 대금 결제는 수출업자가 매수인측에 청구서를 직접 제시하여 약정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화환제도를 이용하여 결제된다. 따라서 신용장은 국제화환제도를 지원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수출업자로서는 신용장조건상 적격한 서류, 즉 수리적격성을 갖춘 운송서류를 정비하고 이를 은행에 제시하게 되는데 매입(또는 지급)은행으로서의 당해 운송서류에 관해 심사절차를 거쳐 당해 환어음을 매입(또는 지급)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용장거래와 운송서류는 사실상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2) 서류의 구성

서류는 일반적으로 복통수로 구비되며, 대부분 계약서나 신용장조건에 요구되는 서류의 통수가 명시된다. 계약서나 신용장에 특별한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각 2통이 정본으로 요구되지만 선하증권은 통상 3통이 1조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첨부되는 서류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겠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통상 제시되는 서류는, CIF조건의 경우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기본적인 서류로 운송관계서류, 보험증권, 상업송장으로 구성되며, FOB조건일 경우에는 운송관계서류와 상업송장만으로 족하다. 그러나 계약서 내지 신용장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지시된 서류의 종류와 내용 및 필요한 통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2. 運送書類 種類

신용장은 국제무역거래의 관행에서 파생된 대금결제제도이기 때문에 신용장거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행을 기초로 하여 행하여질 수 밖에 없다. 신용장에 관한 국제적 관행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장통일규칙의 내용에 함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신용장통일규칙상에서 인정되고 있는 운송서류는 신용장거래에서 빈번히 이용되고 규칙에 명시된 수리가능요건이 갖추어진 운송서류는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적격한 운송서류로 기능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1990년에 국제무역거래관행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ICC(국제상업회의소)의 Incoterms가 개정되고, 항공화물운송의 급증으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의 발행이 일반화 되고, 또한 용선계약운송과 특송운송 등이 국제운송업계에 대두되었으며 특히 전자문서체제의 출현으로 운송서류에 관한 국제적 관행의 변화를 신용장통일규칙에의 반영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무역관행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1993년도에 신용장통일규칙의 제5차개정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제5차개정에서는 화물의 운송방식에 따라 운송서류의 수리가능요건을 운송서류별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운송서류의 종류를 운송수단별로 구분하여 보면

- 1) 해상운송에 있어서는 해상/해양선하증권과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및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 2) 복합운송에 있어서는 복합운송서류, 3) 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운송서류, 4) 육상운송에 있어서는 도로/철도운송서류, 5) 내수로운송에 있어서는 내수로 운송서류, 6) 특송운송이나 우편배달에 있어서는 특사수령증 및 우편수취증, 7)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운송서류 등으로 구분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수리가능한 운송서류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국제적 무역관행을 신용장거래에서 수용함으로써 신용장이 무역거래의 촉진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신용장이 명실공히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무역대금 결제수단으로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명시된 운송서류가 신용장거래의 대상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서 당해서류가 요구되거나 또는 신용장에서 당해서류의 제시를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아야하며 동시에 운송서류의 발행자의 서명 등이 적격요건을 충족해야함은 물론이다.

第 3 章 信用狀去來와 運送書類의 審査原則

1. 書類去來의 原則¹⁷⁾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을 보면 "신용장이 당해 신용장조건을 충족하여 제시되어야할 서류에 대한 언급이 없이 조건만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언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용장조건외의 서류명시조항을 설정하여 신용장거래의 서류거래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신용장거래가 서류거래라는 원칙은 판례법에 의해 확립되어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의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 서류와 관계되는 물품 서비스 또는 기타의 행위의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신용장통일규칙에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¹⁸⁾ 미국통일상법전에도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¹⁹⁾. 신용장의 발행은행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서류거래의 원칙에 따라 제시된 서류가 형식적으로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신용장상의 채무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며, 동시에 발행의뢰인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²⁰⁾. 그러므로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대한 문면상의 심사로 신용장상의 채무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고 신용장거래는 오직 서류만이 거래대상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신용장거래의 서류거래의 원칙이라 한다. 이에 따라 신용장통일규칙상에 요구되는 서류를 정확히 신용장 상에 명시토록 명문화하고 있어서 운송서류의 적격성 여부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2. 完全, 正確性的의 原則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신용장조건은 신용장관계당사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러한 신용장 조건은 신용장발행의뢰인의 지시와 요청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하고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와 변경내용에 대하여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신용장통일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즉 신용장발행의 지시, 신용장 그 자체, 이에 대한 변경의 지시 및 변경 그 자체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하며 발행은행은 신용장거래상의 혼란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장의 내용상에 과도한 명세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지하여야 한다²¹⁾. 신용장의 완전성과 정확성의 원칙(doctrine of comple-

17) 金容福, 信用狀去來의 實際와 法理論, 商經研究 第17輯, 建國大學校 經濟經營研究所, 1992. 8., pp. 108-109

18) UCP 500, 1993, Art. 4 19) UCC 5-114 (1)

20) UCC 5-114 (3)

21) UCP 500, 1993, Art. 5 (a)

teness and preciseness)이란 신용장발행을 위한 지시 신용장 그 자체, 신용장에 대한 여하한 조건변경, 지시 및 그 조건변경 자체는 완전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신용장조건을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은 혼란과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장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을 설득하여 이를 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용장거래를 원만히 수행하고 신용장의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신용장발행의뢰서 또는 조건변경의뢰서에 기재되는 신용장 조건은 거래당사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에 있어서 완전하고 정확해야 하며, 은행은 신용장상 명시된 서류만을 심사하여 신용장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신용장조건의 서류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²²⁾.

3. 嚴格一致의 原則

1) 엄격일치원칙의 내용

신용장거래에서 지급·인수 및 매입 등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신용장조건을 준수한다던가 지급·인수 또는 매입 등을 하도록 수권 받은 은행이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신용장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신용장조건을 엄격히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서류는 은행이 수리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일컬어 소위 엄격충족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이라고 하고 있다²³⁾. 즉,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엄격하게 충족시키는지를 점검하여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함이 판명되면 지급을 하여야 한다. 은행은 은행에 제시된 서류 또는 환어음을 주의 깊게 점검할 의무가 있는데, 극히 중요한 것은 지급을 위해서 환어음과 함께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며, 만일 신용장 조건 불충족일 경우, 은행은 신용장의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시된 서류의 신용장조건의 충족이 은행의 지급의무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신용장의 생명은 신용장상 명시된 제반서류의 정확한 구비와 그러한 서류와의 상환으로 대금지급을 한다는 약정인데 만일 신용장조건의 불충족된 상태에서 지급·인수 또는 매입하였다면 그것은 당해 매입은행이 책임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은행은 지시된 서류가 신용장 내용과 문면상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여야 한다²⁴⁾. 즉 신용장 거래가 상품거래가 아닌 서류의 거래이므로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까닭에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을 엄격하게 충족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2) UCP. 500, 1993, Art. 5 (b)

23) Clive Schmitthoff, Schmitthoff's Export Trade, 7th ed. Stevens & Sons, p.218

24) UCP. 500, 1993, Art. 13 , UCC 5-109(2) & 5-114(1) (2)

시장상황의 전망이 불투명할 때에는 매수인으로서 가능한 한 은행이 인수한 서류의 신용장 조건의 불충족을 이유로 서류의 인수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은 신용장거래상 중요성이 없는 사소한 사항의 상위점이 발견되어도 서류의 인수를 거절하게 되며 이러한 은행의 입장은 신용장에 관한 판례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신용장 조건에의 엄격한 충족되지 않은 서류는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는 법리는 서류의 엄격한 상용주의를 암시하며 신용장거래시 원칙에 의존하는 이유는 거래은행은 발행은행의 특정대리인(Special agent)이고 발행은행은 매수인의 특정대리인이기 때문에 만약 제한된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이 자기의 권한을 이탈하는 행위를 한다면 당사자들은 그러한 대리인의 행위를 否定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은행은 물품 또는 용역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서류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용도 및 실무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희박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미국 통일상법전은 "발행인(An issuer)은 문면상 종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의를 가지고 서류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문면상 정규성을 검사함에 있어서 서류의 진정성, 오류 또는 효력에 대하여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소정의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한 경우에만 은행이 채무이행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13조 a항에서는 서류의 신용장조건 일치에 관한 은행의 점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서류의 엄격충족의 원칙을 신용장거래의 전제로 삼고 있으며 이 원칙에 따라 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충족하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점검하여야 한다. 영국의 Sumner 대법원은 "서류에 관한 한 거의 같다거나 혹은 꼭 같을 것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명언하여 서류의 엄격일치의 원칙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비록 수익자 스스로 발행한 서류가 사기 또는 위조되어도 당해 서류의 진정성에 관계없이 서류 엄격충족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상거래에 있어서 서류의 증거능력을 제고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서류의 엄격일치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신용장이 추구하는 상거래의 원활화에 역행될 우려가 없지 않다.

2) 엄격일치원칙의 판례²⁵⁾

엄격충족의 원칙에 따라서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문면상 충족되는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 은행의 서류 심사목적은 제시된 서류의 진정성 보다는 오직 서류의 문면상 일치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은행의 심사의무는 제시된 서류의 문면상 일치성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서류가 문면상 일치성만 구비하면 은행은 당해 서류와 상환으로 환어음을 매일 결제하여야 하며 정당하게 지급한 발행은행은 신용장 약정에 따라 결제대금을 상환 받게 된다. 따라서 엄격충족의 원칙은 화환신용장거래에

25) 한국외환은행, 신용장통일규칙해설, 1983, pp. 59 -62

서의 모든 약정에 적용된다. 즉 매수인과 은행간의 약정, 은행과 매도인간의 약정, 및 발행은행과 환거래은행간의 신용장거래약정 등에 적용된다. 이러한 엄격충족의 원칙이 준용되어 하나의 거래관습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대표적인 판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Hambro's Bank Ltd., v. J.H. Rayner & Co., Ltd 사건

Denmark의 매수인이 거래은행인 영국의 Hambro's Bank Ltd.을 발행은행으로 하여금, 매도인 Rayner & Co., Ltd.을 수익자로 한 신용장을 발행하면서 "1,400ton의 Coromandel Groundnuts"를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인 Rayner & Co Ltd.가 접수한 신용장조건에서 요구한 기타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정확히 신용장조건대로 작성하였으나 선하증권상에 "Machine-Shelled Groundnut Kernels"로 표기되어 있어서, Hambro's Bank는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상품명의 하자를 구실로 대금지급을 거절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금지급거절에 대하여 Rayner & Co., Ltd.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인 Atkinson판사에 의하여 "Machine-Shelled Groundnut Kernels"가 "Groundnut Kernels"와 동일한 물품이고 또 이와 같은 사실은 London의 농산물 시장에서 실용되고 있는 기술로서 널리 이해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구나 선하증권에 기재된 "C. R. S"는 "Coros" 또는 "Coromandels"에 대한 약어로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있는 것이라고 논한 후 원고승소의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제소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인 Lord Mackinnon판사는 Rayner측은 "Groundnut Kernels"와 "Machine-Shelled Groundnut Kernels"라는 두 표현이 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누구나 동일한 상품이란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을 해야 하는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수많은 업종과 당해 업종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들을 전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특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영국의 상인과 Denmark상인간에 거래인 바, 두 나라에서 사용하는 상품명이 상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예를 들어 모든 법관들은 "1942 Annual Practice"라는 책과 "1942 White Book"이란 것이 동일한 책이란 것을 알 수 없으며 또 수입업자가 특별히 "Coromandel Groundnut"라는 표기를 꼭 필요로 할 어떠한 사유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라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여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조건 충족의 엄격성을 예리하게 요구하였다.

(2) Soproma S. P. A. v. Marine & Animal By Product Corporation 사건

이태리의 Soproma S. P. A회사는 New York의 Marine & Animal By Product Corp.로부터 어류의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계약의 계약서는 London Cattle Food Trade Association의 양식을 이용하여 C & F Savon으로 하고 매수인은 New York의 은행에서 화환 신용장을 발행할 것, 또 매도인이 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서류 중에 지시식(issued to order), 운임선불 (Freight prepaid)이라는 문언기재의 선하증권과 상품이 최저 70%의 단백질을 함유한다

는 뜻의 분석증명서(Analysis Certificate)를 포함시킬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이 New York의 환거래은행에 제시한 선하증권은 정확하지 않았다. 즉 지시식이 아니고, 유통불능이었고, 더욱이 "Freight prepaid"의 문언 대신에 "Freight Collect"로 기재되어 있었으면 품질증명서의 단백질 함유량이 67%로 기재되어 있었다.

은행은 동서류를 거절하였고 매도인은 서류를 재차 New York의 환거래은행이 아닌 매수인에게 직접 제공하고 운임지불의 영수증과 70% 단백질 함유의 분석증명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이 동서류를 거절함으로써, 소송이 제기되었던 바, 본 소송에 있어서, ① 서류를 재차 직접 제공한 것은 본 건과 무관하므로 완전히 무시해야 하며, ② 처음 제시한 인도서류에 대해서는 ㉠ 선하증권이 지시식이 아니기 때문에 C. I. F 또는 C&F계약에 있어서 부적절한 선하증권이며 ㉡ 품질분석의 결과, 극히 적은 단백질 함유량이 판명되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은행이 서류수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조건 충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화물의 동일성 확인에 관한 선하증권의 기능에 대해, 미국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국에서는 상술한 Rayner v. Hambro's Bank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선하증권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비판여론이 비등하였으나 당시의 신용장통일규칙은 상업송품장이 신용장조건을 충족하면 수리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은행의 서류심사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모든 서류를 점검하고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엄격히 충족되어 제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서류가 모두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그것과 상환으로 지급을 행한 은행은 보호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은행은 스스로 그에 대해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의 서류심사에는 언제나 엄격충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운송서류에 관한 한 「거의 같다거나, 괜찮겠지 하는 여지는 전혀 없다.(There is no room for documents which are the same or which will do just as well)라는 Sumner경의 말²⁶⁾을 읊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엄격충족의 원칙은 신용장 또는 서류상에 명시되어 있는 "과도하게 명시되어 있는 상세한 사항" 또는 "명백한 타자상의 오류(obvious type graphical errors)"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4. 相當一致의 原則

1) 相當一致原則의 內容

신용장거래에서 관계당사자는 서류 거래라는 기본원칙하에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의 문면상 일치성을 엄격히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점검할 의무가 있다

26) H. C. Gutteridge & Maurice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1984. London Europa :ub. Ltd., pp.117

는 엄격일치의 원칙을 법원이 고수했었으나 근래에 들어 법원은 엄격충족의 원칙에 융통성을 두고 이 원칙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신용장의 조건이 상당히 충족되면 은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도출되고 있으며,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에서 "...in accordance with..."가 아니라 ".....in compliance with...."로 표기함으로써 서류의 엄격일치의 원칙을 완화하는 경향으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은행이 로보트와 같이 기계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매건 마다 그들의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장통일규칙 제41조 c항 단서조항에 명시하고 있듯이 신용장상의 상품기술과 제시되는 상업송품장상의 상품기술의 내용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기타 서류의 상품기술은 신용장상의 상품기술과 서로 모순이 없이 상당히 충족되면(Substantial Compliance) 당해 송품장이 수리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의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 모든 서류를 심사함으로써...」」라는 규정에 있어서 그 「상당한 주의」에 대한 한계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즉 수익자가 제시된 서류에 의해 신용장의 조건을 본질상 충족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제시된 서류를 은행에서 수리하여도 사실상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는 수리될 수 있는 것이다.

2) 상당일치원칙의 판례

신용장거래에서 상당일치 원칙을 준용한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Crocker Commercial Services Inc. v. Countryside Bank 사건

신용장이 "rocker Commercial Services"가 발부한 송품장에 의한 지급 불이행의 확인을 요구한 바, 은행은 "제시된 송품장은 'factored Clients of Crocker Commercial Services'가 발행하고 'Crocker Commercial Services'에게 양도된 송품장'이기 때문에 지급이 불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발행은행은 신용장조건의 불충족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하여 수익자인 Crocker가 지급을 요구한 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상업송품장은 Crocker 또는 Factored Clients of Crocker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행되었고 동 상업송품장에는 「상당한 일치」가 있었으므로 발행은행은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2) Maurice O'Meara Co. v. National Park Bank 사건

본 사건은 C. I. F 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신용장이 "Newspaper in 72 1/" and 36 1/" rolls to test 11-12, 32lbs"의 선적을 요구했었지만 선하증권상에 "Newspaper tested 12 points 32 pound"로 표시되어 은행이 지급거절한 사건으로 법원은 상기와 같이 표기된 선하증권은 정당한 서류이므로 은행은 이러한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의 결제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이는 신용장조건상의 명시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신용장조건을 상당히 일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간주된다.

(3) Soproma S. P. A. v. Marine & Animals By-Products Corporation 사건
 신용장상 물품의 명세가 "Chilean Fish Fullmeal 70% protein, 10% max. fat, 2% max. sand, 10% max. moisture"로 표시되었으나, 표시된 선하증권상의 물품의 명세는 "Chilean Fishmeal"로, 그리고 상업송품장상의 물품의 명세는 "Chilean Fish Fullmeal 70% protein"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본 사건에서 영국의 법원은 상업송장상에 물품명세가 신용장의 그것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선하증권은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1951 Rev.)와 일치하는 물품명세를 포함했다고 판시하였다.

(4) Laudisi v. American Exchange National Bank 사건
 신용장조건상의 요구되는 서류에 "Alicante Bouchez Grapes"의 표기를 명시하였는데 선하증권상에는 단순히 "Grapes"로 표기되었으나, 법원은 이렇게 제시된 서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Midland Bank Ltd. v. A. Seymour 사건²⁷⁾에 있어서도 신용장조건상 요구된 선하증권은 "—bales Hong Kong duck feathers—85% Clean weighing about—, Price 5s. per lb"이란 표기를 명시하였으나 실제 제시된 선하증권상에는 "—bales Hong Kong duck feathers"로 되어있도 제시된 다른 서류들이 전체적으로 신용장의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은행은 이러한 서류를 수리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시하여 상당일치의 원칙을 준수하는 판례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상당일치원칙을 옹호하는 판례로 무역거래에 있어서 신용장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신용장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법적인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신용장조건상 요구된 상품의 표기가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제시된 서류 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충분한 것이지, 신용장상의 내용과 선하증권상의 내용이 적확히 일치하게 표기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동 사건에 대한 판례는 서류 불일치에 대한 ICC의 견해와 동일한 견해를 표출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상거래의 원활화와 은행의 보호라는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第 4 章 結 論

본 논문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운송서류의 심사원칙의 내용과 한계에 관하여 신용장 통일규칙과 중재판정 및 법원의 판례 그리고 무역관행을 중심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1) 국제무역거래와 신용장제도와의 관계를 고찰하여 신용장의 효용과 기능 그리고 신용장의 특성을 검토하고,

27) 한국의환은행, 전게서 pp.60-61

2) 신용장통일규칙상에 명시된 내용과 중재관정 및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운송서류의 심사원칙을 분석 고찰하여,

3) 신용장거래상에서 실제로 운송서류를 심사하고 처리과정상의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전자문서이용의 증대경향과 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신용장의 주요 목적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인도와 대금결제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즉 신용장은 은행이 발행하는 書狀으로서, 일반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은행의 신용을 국제무역거래에 개입시켜 국제매매계약을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신용장은 비교적 신용력이 풍부한 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書狀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수출입업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효용적 가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신용장은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신용위험과 상품인도불능위험을 예방해 주고, 무역계약을 확정시켜주며, 환위험을 제거시켜주고, 수출입업자의 신용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켜주는 독특한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독립 추상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신용장거래의 핵심적 내용으로 무역거래에 있어서 신용장의 이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거래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의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신용장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신용장조건의 이행여부는 서류에 의해서만 입증(서류거래의 원칙)해야하며, 신용장의 내용을 완전 정확하게 명시(완전 정확성의 원칙)해야하고, 은행은 신용장조건이행여부를 제시된 서류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점검(엄격일치의 원칙)해야하며, 신용장내용에 부합되도록 함목적적으로 판별(상당일치의 원칙)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거래는 실제로 물품거래지만 무역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서류거래이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서류의 중요성은 제언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특히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서류는 신용장거래의 핵심적 내용이며 여러 가지 서류 가운데 운송서류는 물품의 소유권 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즉 운송서류의 적격요건과 적격성의 판별 기준은 신용장거래의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무역거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겠다.

신용장거래에서 상술한 원칙들을 적용할 경우 사실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사안별에 따라 합리적인 판별을 해야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경기상태가 악화되고 계약 물품의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운송서류에 대한 심사과정이 엄격히 적용될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는 신용장조건의 엄격일치 원칙의 충족이 선행되어야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제품 사이클의 단축현상, 소품종 소량생산체제, 소비자의 소비변화 등으로 무역거래에서의 트러블 메이커의 준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신용장조건의 엄격한 이행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개정(UCP 500, 1993)에서는 운송서류를 운송수단별로 적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EDI방식의 거래가 급증이 예견되고 있는 현실에서 운송서류의 적격성 확보와 심사원칙의 정착은 신용장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신용장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송서류의 심사원칙에 대한 준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전자문서의 이용증대에 대비한 서명 등의 진정성과 보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무역관련기관간의 정보교환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국제적 통신망구축이 절실히 요망되며 신용장거래 관행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